공고 제 2026-226호

「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」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
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**「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」**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

❍ 추가모집 규모 : 7명(사업신청일 기준, 거주지가 '청주시'인 소상공인)

❍ 지원내용 :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**(월 최대 2백만원, 최대 6개월)**

❍ 지원대상 :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*

*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

① 거주지*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*거주지: 청주시

② 사업신청일 기준,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

③ 사업신청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

④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 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

《제외대상》 *p4.「지원금 지급 제외」참고

- 사업자의 배우자, 직계가족(직계존비속)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·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
  예)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「대체인력지원금」,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,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,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, 각 시·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.
  * 수혜 기간 및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
-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
-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, 중대재해발생업체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
- **지원제외 대상업종**[별첨]

2 모집개요

□ 신청모집

○ 신청기간 : 2026.11.25.(수) ~ 12.1.(화) * 7일간

○ 신청방법 : **소상공인24(www.sbiz24.kr)**

※ 거주지 기준 사업 신청 필수(마이데이터 동의 권장)

→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서류 자동 연계(미동의 또는 연계 불가 시 아래 서류 직접 발급·업로드)

○ 신청 시 제출서류

구분		번호	신청서류	비고
필수	마이데이터 연동	1	사업자등록증명원	- 발급처: 정부24 또는 홈택스 ※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※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문서
		2	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	-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) ※ 유효기간 내 문서
		3	매출액 증빙 서류	- 발급처: 정부24 또는 홈택스 (과세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(면세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* 기간: 2025년 1월~12월까지
		4	주민등록표 등본	- 발급처: 정부24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 주소변동 체크 ※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문서
	미연동	5	가족관계증명서	- 발급처: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※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문서
선택	미연동	6	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	- 장애인 여부 확인용, 해당자에 한함

*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제출 기한을 정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내용 안내

* **제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, 반려 처리(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**

□ 지원내용 및 대체인력 채용 조건

○ 지원내용 :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**(월 최대 2백만원, 최대 6개월)**

<지원금 지급 예시>

연도	주 근로시간	월급(세전)	산출내역	지원금
2026	주 40시간	2,156,880원	10,320원 × 209시간	2,000,000원
	주 35시간	1,888,560원	10,320원 × 183시간	1,888,560원
	주 30시간	1,620,240원	10,320원 × 157시간	1,620,240원

*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.

* 중도 입·퇴사 등의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급

○ 대체인력 채용조건

- 채용 대상 :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, 직계가족(직계존비속)은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
- 대체인력 근로조건 :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

□ 지원절차

모집공고	신청 및 접수	지원대상 선정	대체인력 고용	지원금 청구 및 지급	점검
공고일로부터 접수 시작	➡ (소상공인24) 신청·접수 (이메일) 검토·보완	➡ 선정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정 개별통보	➡ (소상공인)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	➡ (청구) 소상공인→센터 (지급) 센터→소상공인	➡ 정기점검, 불시점검 등 점검 실시

□ 문의처

○ (사업 관련 문의)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: ☎043-230-9769

○ (신청시스템 관련 문의) 소상공인24: ☎1644-5302

3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□ 선정방법

○ 선착순 원칙

- 신청기간 동안* 지원 목표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다음 우선순위 적용

*** 추가모집 마감 후 일괄 검토하여 선정 통보**

<우선순위 적용 가점표>

구분	세부 기준	가점(점수)
1) 직전 연도 연매출	1천 2백만 원 이상 ~ 3천만 원 이하	100점
	3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	90점
	4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	80점
	5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	70점
	6천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	60점
	7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	50점
	1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	40점
	3억 원 초과 ~ 6억 원 이하	30점
2)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	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*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필수	+10점
	한부모 가정 사업자(가족관계증명서 기준)	+10점
	장애인 사업자 (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)	+10점
3) 다자녀 가구 (만 18세 이하 자녀 수)	3명 이상	+10점
	2명	+7점

* 동점자 발생시 ❶직전 연도 연매출액 가점(점수)이 높은 순, ❷경제적 취약계층, ❸다자녀 순으로 선정

□ 선정통보

○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예정(문자 또는 이메일)

○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**고용완료*** **필수**(미고용시 선정취소)

※ 12월에 선정 통보 받은 경우, 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완료 해야함.

* 고용완료 :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

- 사업신청일 당시 대체인력으로 **고용*** 중인 근로자의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

- 선정통보 이후 신규 고용하는 대체인력은 고용완료일 이후 근무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(월 최대 2백만원, 최대 6개월)까지 지원

□ 지원금 지급

○ 매월 청구에 따른 지원금 후지급(이메일 접수)

- (소상공인)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☞ (센터) 증빙서류 검토 ☞ 청구인(소상공인) 명의의 통장에 입금

- 선정자(소상공인) 대상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

○ 시·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일괄지급 가능(사전협의)

4 기타사항

□ 지도·점검

○ 정기점검

- 소상공인 및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정기 현장점검 실시

- 정기 지도점검 진행 시, 사업장 내 인사노무서류 비치

·근로자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명세서, 고용·퇴직 관련 서류 등

* 근로기준법 제42조, 시행령 22조

○ 불시점검

- 무작위 선정 또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사전 제출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정보를 토대로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

5 유의사항

□ 지원금 지급 제외

○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

○ **정당한 사유(4대보험 관련 법률 등) 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**

***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**

○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,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, 또는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

○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

○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

○ **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**

○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,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

○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,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부정수급 처리 방안

○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며,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보조금법」에 따라 처리

1) 부정이익 환수 :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,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

2) 제재부가금 부과 : 환수에 추가하여,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

별첨 지원제외 대상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6390 중	**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**
711, 712	**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**
731	**수의업**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**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**
75999 중	**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**
86	**보건업** **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**
91113	**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**
91121	**골프장 운영업**
9122 중	**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**
91242	**카지노 운영업**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